

[별 표]

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관련)

아세안 회원국	품목번호	품 명	관세율 ¹⁾ (%)
인도네시아	0306	갑각류[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, 산 것과 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하며,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·조분과 펠리트(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)를 포함한다]	
	0306.1	냉동한 것	
	0306.11.0000	닭새우류(팔리누루스종·피누리루스종·자수스종)	5
	0306.12.0000	바닷가재(호마루스종)	5
	1302	식물성의 수액과 엑스, 펙틴질,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,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·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(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	
	1302.3	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(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	
	1302.31.1000	실한천	5
	1302.31.2000	분한천	5
	1302.31.9000	기타	5
	8701	트랙터(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)	
8701.10.0000	보행운전형 트랙터 - 2륜 트랙터(농업용 트랙터는 제외한다)	5	
말레이시아	8703	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(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,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)	
	8703.24	실린더용량이 3,000시시를 초과하는 것	
	8703.24.10	4,000시시 이하인 것	
	8703.24.1010	신차 - 구급차	5
	8703.24.1020	중고차	

8703.24.90	- 구급차 기타	5
8703.24.9010	신차	
8703.24.9020	- 구급차 중고차	5
	- 구급차	5
8711	모터사이클(모페드를 포함한다)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(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) 및 사이드카	
8711.20	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	
8711.20.1000	모터사이클	
	- 실린더용량이 200시시를 초과하고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(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-사이클과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)	5
8711.20.2000	사이드카	
	- 실린더용량이 200시시를 초과하고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(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-사이클과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)	5
8711.20.9000	기타	
	- 실린더용량이 200시시를 초과하고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(엔진과 페달시스템이 함께 장착된 오토-사이클과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)	5
8711.30	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	
8711.30.1000	모터사이클	
	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(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)	5
8711.30.2000	사이드카	
	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(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)	5
8711.30.9000	기타	
	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(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)	5

미얀마	1302	식물성의 수액과 엑스, 펙틴질,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,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·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(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	
	1302.3	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(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	
	1302.31.1000	실한천	2
	1302.31.2000	분한천	2
	1302.31.9000	기타	2
	2207	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)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(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)	
2207.20.0000	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(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)	5	
필리핀	8708	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)	
	8708.2	차체(운전실을 포함한다)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	
	8708.29.0000	기타	
		- 안전벨트 부분품	3
		-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	
		-- 제8701호 차량용의 것	3
		-- 구급차용의 것	3
		-- 제8702호, 제8703호, 제8704호(소호 8704.10호의 것은 제외한다) 차량용의 것	
		--- 도어트림 우/좌, 리어 도어트림 좌/우, 카페트, 하체소음흡입제, 타이어 흡받이, 트림내장제[예: 파스너, 트렁크매트, 차 친장자재, 전후 필라(차체 구분축), 필라(중앙축의 상하)트림, 대쉬보드 흡음재, 도어받침 흡음재, 플레이트 어셈블리]를 제외한 것	3
	8708.50	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(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	
8708.50.2000	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		
	- 완전히 조립되지 아니한 것	3	
8708.80.0000	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(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)		
	- 서스펜션 쇼크업소버의 부분품(제8701호 차량용의 것은 제외한다)	1	

	8708.9	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	
	8708.91.0000	방열기와 그 부분품 - 부분품	3
	8708.99.9000	기타 - 미조립 연료탱크, 엔진브라켓 및 알루미늄 방열기 코어(단열형에 한정한다) -- 제8701호의 것 --- 미조립 연료탱크, 엔진브라켓 --- 기타 --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--- 미조립 연료탱크, 엔진브라켓 ---- 제8702호부터 제8704호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탱크 로우어, 퓨얼 캡, 필터 파이프, 필터 호스 어셈블리, 연료탱크 밴드, 연료탱크 및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를 제외한 것 --- 기타 ---- 제8702호부터 제8704호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탱크 로우어, 퓨얼 캡, 필터 파이프, 필터 호스 어셈블리, 연료탱크 밴드, 연료탱크 및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를 제외한 것	1 3 1 3
베트남	8409	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	
	8409.9	기타	
	8409.99	기타	
	8409.99.2000	제87류의 차량용의 것 - 총 적재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수송차량용의 것(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)	3
	8708	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)	
	8708.10.0000	완충기와 그 부분품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3
	8708.2	차체(운전실을 포함한다)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	
	8708.29.0000	기타 -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-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, 16인승 이하 차량용, 카고 트	3

	럭 허브용 및 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한다)	
8708.30	제동장치와 그 부분품	
8708.30.1000	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3
8708.30.2000	브레이크 부스터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3
8708.30.3000	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3
8708.30.9000	기타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3
8708.40.0000	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- 부분품 -- 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	5
8708.50	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(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	
8708.50.1000	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(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과 그 부분품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-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 -- 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	5 3 5
8708.50.2000	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	5 3

8708.70.0000	<p>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</p> <p>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휠 센터 디스크, 센터 캡(로고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) -- 소호 제8704.10호 또는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3 - 기타 -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3 	
8708.80.0000	<p>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(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스펜션 시스템 -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5 -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3 - 부분품 -- 제8701호의 것 --- 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 5 --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---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--- 기타 5 	
8708.9	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	
8708.91.0000	<p>방열기와 그 부분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열기 -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5 -- 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 3 - 부분품 --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---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	

	---	기타	5
8708.92.0000		소음기(머플러)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	
	-	부분품	
	--	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	5
8708.93.0000		클러치와 그 부분품	
	-	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5
	-	제8702호, 제8704호,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)	3
8708.94.0000		운전대·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	
	-	운전대·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	
	--	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(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)	5
	--	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(제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)	3
	-	부분품	
	--	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	5
8708.95		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	
8708.95.1000		에어백	
	-	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	5
8708.95.9000		기타	
	-	소호 제8701.10호 또는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에 한정한다)의 것이 아닌 것	5
8708.99		기타	
8708.99.9000		기타	
	-	미조립 연료탱크, 엔진브라켓 및 알루미늄 방열기 코어(단열형에 한정한다)	
	--	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	
	---	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	3
	---	기타	5
	-	기타	

	-- 소호 제8701.20호 또는 제8701.30호의 것	5
	-- 소호 제8701.90호(농업용 트랙터는 제외한다)의 것	5
	-- 크라운 힐과 피니언	
	---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	3
	--- 기타	5
	-- 엘피지(LPG) 자동차 실린더	
	---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	3
	--- 기타	5
	-- 기타	
	--- 스프링을 제외한 것	5

1)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